

연구개발비 비목별 계상기준

2016.3.3 기준

비목	세목	사용용도	계상기준
직접비	인건비	해당 연구개발과제에 직접 참여하는 내부·외부 연구원에게 지급하는 인건비	1. 소속기관(재직 중인 기관을 포함한다)의 급여 기준에 따른 연구기간 동안의 급여총액(4대 보험과 퇴직급여충당금의 본인 및 기관 부담분 포함)을 해당 과제 참여율에 따라 계상한다. 비고: '해당 과제 참여율'이란 정부출연연구기관 및 특정연구기관 등 인건비가 100퍼센트 확보되지 않은 기관의 경우 연구원의 연봉총액을 100으로 할때 해당 연구개발과제에서 연구원에게 지급될 인건비의 비율을 말하며, 인건비가 이미 확보된 기관의 경우 실제로 해당 연구개발과제에 참여하는 정도를 말한다. 2. 정부출연연구기관 및 특정연구기관 등 인건비가 100퍼센트 확보되지 않는 기관에 소속된 연구원이 새로운 연구개발과제에 인건비를 계상할 때에는 이미 수행중인 연구개발과제 참여율을 모두 합산한 결과 130퍼센트를 넘지 않는 범위에서 계상한다. 이 경우 정부수탁사업과 제3조제1호에도 불구하고 정부출연연구기관 및 특정연구기관 등의 기본사업을 포함하여 산정하며, 연구개발과제 참여율의 최대한도를 이미 확보한 연구원은 연구 개발과제 참여율을 계상하여서는 안된다 3. 원 소속기관으로부터 지급받는 인건비에 해당하는 부분은 현물 또는 미지급 인건비로 계상하되, 현금으로 지급하지 않는다. 4. 제3호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목의 경우는 현금으로 계상하여 지급할 수 있다

비목	세목	사용용도	계상기준
			가 . 지식서비스 분야의 개발내용을 포함한 과제를 수행하는 중소기업 소속 연구원의 인건비 나. 「국가과학기술 경쟁력강화를 위한 이 공계 지원특별법」제18조에 따라 연구개발을 전문으로 하는 연구개발서비스업자로 신고한 기업에 소속된 연구원으로 해당 연구개발과제에 직접 참여하는 연구원의 인건비 다. 중소기업의 경우 해당 연구개발과제수행을 위해 신규로 채용하는 연구원의 인건비(신규 채용 연구원은 사업 공고일 기준 6개월 이전에 채용한 연구원도 인정) 라. 그 밖에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현금으로 계상하여 지급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연구원의 인건비
	학생 인건비	1. 해당 연구개발과제에 참여하는 소속 학생연구원(「기초연구진흥 및 기술개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2조제3호에 따른 박사후연구원을 포함한다)에게 지급 하는 인건비 2. 「특정연구기관 육성법 시행령」제3조 제4호부터 제11호까지의 연구기관 및 정부출연연구소(이	1. 해당 연구개발과제별로 투입되는 인원 총량을 기준으로 계상한다. 2. 참여율 100퍼센트를 기준으로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이 정한 금액을 해당 과제 참여율에 따라 계상한다. 이 경우 연구개발과제 참여율은 정규수업에 지장을 주지 않는 범위에서 계상한다

비목	세목	사용용도	계상기준
		하 ‘출연연구기관등’이라 한다)와 대학이 협약을 체결하여 운영하는 학·연 협동과정을 통하여 해당 연구개발과제에 참여하는 학생연구원에게 지급하는 인건비 3. 출연연구기관등에서 실시하는 6개월 이상의 연수프로그램을 통하여 해당 연구개발과제에 참여하는 학생연구원에게 지급하는 인건비	
	연구 장비 재료비	1. 해당 연구개발과제의 최종(단계) 종료 2개월 이전에 구입이 완료되어 해당연구에 사용할 수 있는 기기·장비(개인용컴퓨터는 연구개발과제 수행기관이 비영리기관이고, 자체규정에 따른 절차를 이행한 경우만 해당), 연구시설의 설치·구입·임차·사용에 관한 경비와 운영비 등	실제 필요한 경비를 계상한다.

비목	세목	사용용도	계상기준
		부대 경비(연구인프라의 조성을 목적으로 하는 사업의 경우, 건축비, 부지 매입·조성비 등 포함) 2. 시약(試藥)·재료 구입비 및 전산 처리·관리비 3. 시제품(試製品)·시작품(試作品)·시험설비 제작경비(자체 제작하는 경우 노무비를 포함한다)	
	연구 활동비	1. 연구원의 국외출장여비(체재비를 포함한다) 2. 과제와 직접 관련 있는 인쇄·복사·인화·슬라이드 제작비, 공공요금, 제세공과금 및 수수료 등 3. 전문가 활용비, 국내외 교육훈련비, 도서 등 문헌구입비, 회의장 사용료, 세미나 개최비, 학회·세미나 참가비, 원고료, 통역료, 속기료, 기	연구개발과제 수행기관이 정한 기준이 있는 경우에는 그 기준에 따라 계상하고, 연구개발과제 수행기관이 정한 기준이 없는 경우에는 실제 필요한 경비를 계상한다. 이 경우 국외 출장여비는 연구개발과제 수행기관의 자체 여비기준이 있는데도 연구개발과제 수행을 위한 여비기준을 별도로 정하여 그 기준에 따라 계상해서는 안되며, 연구원이 공무원인 경우에는 「공무원 여비 규정」에 따라 계상하여야 한다.

비목	세목	사용용도	계상기준
		술도입비 등 4. 시험·분석·검사, 임상시험, 기술정보 수집, 특허정보 조사·분석·확보전략 수립 등 연구개발서비스 활용비 5. 세부과제가 있는 경우에는 해당 연구개발과제의 조정 및 관리에 필요한 경비	
	연구과제추진비	1. 연구원의 국내 출장여비 및 시내교통비 2. 사무용품비, 연구환경 유지를 위한 기기·비품의 구입·유지비용 등 3. 회의비(연구활동비의 회의장 사용료, 전문가활용비는 제외한다) 4. 해당 연구개발과제 수행과 관련된 식대	1. 연구개발과제 수행기관이 정한 기준이 있는 경우 그 기준에 따라 계상하고, 연구개발과제 수행기관이 정한 기준이 없는 경우 실제 필요한 경비를 계상한다. 이 경우 제19조제11항에 따라 정산하지 않는 경우에는 직접비의 10퍼센트 범위에서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정하는 금액 이하로 계상하여야 한다. 2. 국내 출장여비는 연구개발과제 수행기관의 자체 여비기준이 있는데도 연구개발과제 수행을 위한 여비기준을 별도로 정하여 그 기준에 따라 계상해서는 안되며, 연구원이 공무원인 경우에는 「공무원 여비 규정」에 따라 계상하여야 한다. 3. 연구환경 유지를 위한 기기·비품의 구입·유지비용은 연구실의 냉난방 및 건강하고 청결한 환경 유지를 위하여 필요한 기기·비품의 구입·유지 비용을 말한다.
	연구	해당 연구개발과제	소관 부처의 세부규정에 따라 사업의 특성 및

비목	세목	사용용도	계상기준
	수당	수행과 관련된 연구 책 임자 및 참여연구원 의 보상금·장려금 지 급을 위한 수당	연구성과 등을 고려하여 인건비(인건비로 계상 된 현물·미지급인건비 및 학생인건비 포함)의 20퍼센트 범위에서 계상한다.
	위탁 연구 개발비	연구의 일부를 외부 기관에 용역을 주어 위탁 수행하는 데에 드는 경비	직접비, 간접비로 계상하되, 원칙적으로 해당 연구개발과제의 위탁연구개발비를 제외한 직접 비의 40퍼센트를 초과할 수 없다.
간접비	간접비	1. 인력지원비 가. 지원인력 인건 비: 연구개발에 필 요한 지원인력(장비운영, 연구실 안전관리 전 문인력 등을 포함한 다), 연구책임자의 연구비 정산 등을 직접 지원하기 위한 인력(한 개 또는 여 러 개의 연구실을 묶어 총 연구개발비 가 10억원 이상인 고, 정산 등 행정업 무 부담이 큰 경우 만 해당한다)의 인 건비 나. 연구개발능률성 과급: 연구기관(주 관연 구기관, 협동연구기 관, 공동연구기관,	1. 간접비 비율이 고시된 비영리기관은 직접비 (미지급 인건비, 현물 및 위탁연구개발비는 제 외한다)에 고시된 간접비 비율을 곱한 금액 이 내에서 계상한다. 2. 간접비 비율이 고시되지 않은 비영리법인은 직접비(미지급 인건비, 현물 및 위탁연구개발비 는 제외한다)의 17퍼센트범위에서 계상한다. 3. 영리법인(「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 5조제3항제1호의 공기업을 포함한다)에 대해서 는 직접비(미지급 인건비, 현물 및 위탁연구개 발비는 제외한다)의 5퍼센트 범위에서 실제 필 요한 경비로 계상한다. 다만, 「국가과학기술 경 쟁력강화를 위한 이공계지원특별법」제18조에 따라 연구개발을 전문으로 하는 연구개발서비 스업자로 신고한 기업은 10퍼센트까지 계상 할 수 있다. 4. 연구개발능률성과급은 해당 연도 간접비 총 액의 10퍼센트 범위에서 계상한다 5. 기술창업 출연·출자금은 해당 연도 간접비 총액의 10퍼센트 범위 에서 설립이후 최장 5년 까지 집행할 수 있다

비목	세목	사용용도	계상기준
		위탁연구기관)의 장 이 우수한 연구성과 를 낸 연구자 및 우 수한 지원인력에게 지급하는 능률성과 급 2. 연구지원비 가. 기관 공통지원 경비: 연구개발에 필요한 기관 공통지 원경비 나. 사업단 또는 연 구단 운영비: 사업 단 또는 연구단 형 태로 운영되는 경우 운영경비 및 비품 구입경비 다. 연구실 안전관 리비: 연구개발과제 수행과 관련하여 연 구실험실 안전을 위 한 안전교육비 등 예방활동과 보험 가 입 등 연구실 안전 환경 조성에 관한 경비 중 「연구실 안 전환경 조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정하 는 경비	

비목	세목	사용용도	계상기준
		라. 연구보안관리비: 연구개발과제 수행 과 관련하여 보안장 비 구입, 보안교육 및 대 중소기업 상 생협력 촉진에 관한 · 「법률」제24조의2 에 따른 중소기업의 기술자료 임치(任 置) 관련 비용 등 연구개발과제 보안 을 위한 필요경비 마. 연구윤리활동비: 연구개발과제 수행 과 관련하여 연구윤 리규정 제정·운영, 연구윤리 교육 및 인식확산 활동 등 연구윤리 확립, 연 구부정행위 예방 등 과 관련된 경비 바. 연구개발준비금: 정부출연연구기관, 특정연구기관 및 미 래창조과학부장관이 별도로 고시하는 비 영리 민간 연구기관 에 소속된 연구원의 일시적 연구 중단	

비목	세목	사용용도	계상기준
		(법 제11조의2제1항에 따라 참여제한을 받은 경우 또는 내부 징계로 인한 일시적 연구 중단의 경우는 제외한다), 연구 연가, 박사 후 연수 또는 3개월 이상의 교육훈련(연수 또는 교육훈련 기관에서 비용을 부담하지 않는 경우만 해당한다), 신규채용 직후 처음으로 과제에 참여하기까지의 공백 등으로 인하여 연구 개발과제에 참여하지 않는 기간 동안의 급여 및 파견 관련 경비 사. 대학 연구활동 지원금: 학술용 도서 및 전자정보 (Web - DB, e-Journal) 구입비, 실험실 운영 지원비, 학술대회 지원비, 논문 게재료 등 대학의 연구활동	

비목	세목	사용용도	계상기준
		을 지원하는 경비 (직접비에 계상되지 않는 경우만 해당한다) 아. 대학의 연구 관련 기반시설 및 장비 운영비(직접비에 계상되지 않는 경우만 해당한다) 3. 성과활용지원비 가. 과학문화활동비: 연구개발과 관련된 홍보를 위한 과학홍보물 및 행사 프로그램 등의 제작, 강연, 체험활동, 연구실 개방 및 홍보전문가 양성 등 과학기술문화 확산에 관련된 경비 나. 지식재산권 출원·등록비: 해당 연구기관에서 수행하는 국가연구개발사업과 관련된 지식재산권의 출원·등록·유지 등에 필요한 모든 경비 또는 기술가치 평가 등 기술이전에 필요한 경	

비목	세목	사용용도	계상기준
		비, 국내·외 표준 등록 등 표준화(인 증을 포함한다) 활 동에 필요한 경비, 연구노트 작성 및 관리에 관한 자체 규정 제정·운영, 연 구노트 교육·인식확 산 활동 및 연구노 트 활성화 등과 관 련된 경비 다. 기술창업 출연· 출자금: 연구기관에 서 수행하였거나 수 행하고 있는 국가연 구개발과제와 관련 된 기술지주회사, 학교기업, 실험실공 장, 연구소기업의 설립및 운영에 필요 한 비용	

비고

1. 정부출연연구기관 및 특정연구기관 등 인건비가 1. 100퍼센트 확보되지 않는 기관은 총 소요 인건비의 100퍼센트를 초과하지 않도록 인건비 지급 총액을 관리하여야 하며, 이를 초과하는 금액이 발생한 경우에는 연구개발 관련 용도로 이사회의 승인을 받아 사용하고, 해당 금액과 사용계획, 사용 후 집행내역을 다음해 4월 30일까지 기획재정부장관과 미래창조과학부장관 및 소관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2. 대학, 특정연구기관(해당하는 기관만 해당한다) 및 학연협동 석사·박사 과정을 운영하는 정부출연연구기관의 학생연구원에게 지급되는 학생인건비는 연구책임 자가 공동관리해서는 안 된다.
3.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소관 국가연구개발사업에 대한 기획·관리·평가 및 활용 등의 업무를 대행하도록 하기 위하여 전문기관에 위탁한 사업에 대해서는 연구수당을 지급할 수 없다.
4. 연구기관의 장 및 연구책임자는 연구수당 지급에 관하여 기여도 평가 등 합리적인 기준을 마련하여야 하고, 그 기준에 따라 지급하여야 한다.
5. 연구기관은 자체적으로 성과평가를 실시하고, 그 결과에 따라 연구개발능률성과급을 지급하여야 한다.